

2024년 소로전문요양원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

1. 계약기간 :
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인정받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에 따르며, 노인장기요양인정등급의 변동과 인정유효기간 만료의 경우 유효한 등급(시설급여)으로의 갱신 시 재계약을 할 수 있다.
2. 계약의 목적 :
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간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수급자의 건강향상 및 유지에 최선을 다하고
요양원 이용에 따른 입소자 및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를 다하고자 함이다.
3.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
가. 월이용료 : 당해연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
고시에 따르며, 입소자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의 20%를 본인이 부담한다. 기초생활수급권자는 그 비용
을 본인이 부담하지 아니하며,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경감대상자는 12%, 8%를 본인이 부담한다.

[2022년 10월 1일부터 「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별표4.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」개정으로
노인요양시설의 요양보호사 인력배치기준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으며, 다만,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
2024년 12월 31일까지 유예기간을 두어, 요양보호사 배치 인원^에 따라 이용 수가(시설 이용료)가 변경
될 예정이다.]

요양보호사 인력배치 기준 2.5:1 (단위 : 원)

등 급	1일 수가	30일 기준	본인부담금 (1일기준)				비 고
			일반 대상자 (20%)	경감대상자		국민기초 생활수급 권자	
				12%	8%		
1등급	80,630	2,418,900	16,120	9,670	6,450	-	
2등급	77,900	2,337,000	15,580	9,340	6,230	-	
3등급	68,900	2,067,000	13,780	8,270	5,510	-	

※ 4,5등급 시설급여는 3등급 수가 적용

요양보호사 인력배치 기준 2.3:1 (단위 : 원)

등 급	1일 수가	30일 기준	본인부담금 (1일기준)				비 고
			일반 대상자 (20%)	경감대상자		국민기초 생활수급 권자	
				12%	8%		
1등급	84,240	2,527,200	16,850	10,110	6,740	-	
2등급	78,150	2,344,500	15,630	9,380	6,250	-	
3등급	73,800	2,214,000	14,760	8,850	5,900	-	

※ 4,5등급 시설급여는 3등급 수가 적용

나. 요양시설 계약의사 진찰에 따른 회당 본인부담금 :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근거하여, 월 2회 이상 계약의 진료가 제공되며 초진은 계약의사가 어르신을 처음 뵙고 진찰한 경우를 말하며 그 이후는 모두 재진에 해당, 본인부담금은 진료 수가 변동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, 입소자는 계약의 진료비 비용의 20%를 본인이 부담한다. 기초생활수급권자는 그 비용을 본인이 부담하지 아니하며,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경감대상자는 12%, 8%를 본인이 부담한다.

진료비용	일반(20%)	감경/의료급여		비 고
		12%	8%	
초진 17,600원	3,520원	2,110원	1,400원	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무료
재진 12,550원	2,510원	1,510원	1,000원	

다. 기타비용부담액(비급여대상) :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르며, 식사재료비(일반, 경관, 당뇨식), 간식비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소로전문요양원 기관정보에 고지된 금액으로 한다.

비급여 항목	단가 기준	30일 기준	비 고
식재료비 1일*3식(간식비 포함)	2,200원/1식	198,000원	
상급침실 이용료(2인실1인사용)	5,670원/1일	170,100원	

4. 요양원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요양원과 서비스이용자, 신원인수인(보호자)간에 이용계약을 체결해야 하며, 신원인수인 및 입소자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과 같다. 단,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이용계약서에 따른다.

가. 신원인수인의 권리·의무

(권리)

- 입소자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와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(단, 병원 입원 시는 간호,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.)
- 입소자의 신변 이상 시 즉시 연락받을 권리(단,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)
- 표준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충실한 이행에 대한 정보 요구와 서비스에 대한 불만족 시 시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
- 입소자가 부당한 대우 등을 당할 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
- 기타 입소자의 안락한 노후생활을 위해 필요 시 요양원에 협조를 요청할 권리

(의무)

- 입소자에 대하여 신원인수인을 1명으로 정하는 것으로 한다.
- 입소자가 요양원 서비스 이용 시 고의로 인해 발생한 시설 및 비품의 파손에 대한 책임
-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 제공과 의무
-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 의무
- 입소자가 요양원을 이용하는데 따른 채무 발생 시 변제의 책임
-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

-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, 입·퇴소 절차,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
- 신원인수인은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요양원에 통지해야 한다.
 - 1) 입소자의 신원인수인이 변경되었을 경우
 - 2) 입소자의 신원인수인의 주소지가 변경되었을 경우
 - 3) 입소자의 신원인수인이 사망 또는 금치산 혹은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았을 경우
 - 4) 기타 입소자의 신원인수인으로서 의무이행이 어려울 경우

나. 입소자의 권리·의무

(권리)

- 요양원의 시설물을 안전한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
- 요양원에서 제공하는 장기요양서비스를 성실하게 제공받을 권리
- 입소자의 인권(사생활, 학대방지, 식생활, 위생, 의료 및 건강, 프로그램, 교육, 진정권 등)을 보장받을 권리
- 타 입소자와 차별받지 않을 권리

(의무)

- 월 이용료 납부 의무
- 요양원 내 건전한 생활 분위기 조성 의무
- 요양원 내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
- 신원인수인(보호자)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
- 기타 요양원 규칙 이행 의무

5. 계약의 해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 될 경우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가. 입소자 또는 신원인수인의 의사에 따라 퇴소를 결정할 때

나. 입소자·이용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

다. 입소자·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받고 다른 어르신이나 서비스 제공자에게 전염시킬 우려가 있을 때

라. 2회 이상 이용료를 연체하고도 사유 및 기한을 약속하지 않을 때(고의성)

마. 요양원 내에서 요양원의 규칙이나 요양원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요양원 운영 또는 타 입소·이용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

바.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로 타 입소·이용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주거나 서비스 제공자에게 폭력으로 인한 상해를 가할 때

사.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

6. 이용료 등 비용 변경 방법 및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용료 등 비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, 요양원은 입소자나 보호자에게 사전고지를 통해 사실을 알리고, 재계약을 체결해야 한다. 단, 제4호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고지해야 한다.

가. 입소자의 노인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

나. 노인장기요양급여 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

다.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

라. 그 밖의 비급여 항목의 추가나 금액의 변경이 있을 경우